

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5년 6월 20일
행정재경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5년 5월 29일, 금천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25년 5월 29일 회부
- 다. 상정일자 : 제25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최 중
제1차 행정재경위원회(2025년 6월 20일)
 -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다양성을 위해 예산 전 과정에 주민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, 다양한 계층의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성화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주민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한 참여 보장 명시(안 제1조, 제3조, 제4조, 제5조, 제7조, 제8조, 제16조, 제17조)
-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기능 구체화(안 제8조)
-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시 노인, 청소년,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및 청년의 참여 보장에 대한 근거 마련(안 제9조제2항)

-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연임 횟수를 2회에서 1회로 축소(안 제9조제5항)
-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구체화하고 참여예산 주민제안 검토 및 심사 시 안전사고 예방사업의 우선 검토를 보장(안 제9조의3 신설)
-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 결정 규정 삭제(현행 제13조제3항 단서 삭제)
-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간사를 “예산담당부서장”에서 “주민참여예산 업무담당 부서장”으로 변경(안 제14조제1항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검토보고 : 전문위원 박병규

나. 검토의견

- 본 조례 개정안은 예산 전 과정에 주민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, 다양한 계층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으로,
- 주요 개정 내용은
 - 안 제1조, 제3조, 제4조 등에서는 2020년 3월에 개정된 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 제46조의 취지를 반영하여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으로 명시하여 주민의 참여 보장을 확대하였고
 - ※ 행정안전부 주민참여예산제도 추진계획에 “예산과정의 주민참여 절차·방법” 예시에 「사업제안 → 사업선정 → 예산편성 → 예산집행 → 예산결산」이라고 표현하고 있음.
 - 안 제8조에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기능을 구체화함.
 - ※ 제8조제3호 신설은 주민의견 수렴 방법을 나열한 것이며, 현재 현장 방문을 시행하고 있음.

- ※ 제8조제4호 지방의회에 주민의견서 제출은 지방재정법 제39조제3항¹⁾의 의무사항임.
- 안 제9조제2항에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시 노인, 청소년,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및 청년의 참여 보장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
- 안 제9조제5항에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연임 횟수를 2회에서 1회로 축소하고 현행 위원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2회로 운영하고자 부칙에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를 둬.
- 안 제9조의3에서는 주민제안 검토 및 심사 시 안전사고 예방사업의 우선 검토를 명시함.
- 안 제13조제3항의 단서 규정인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 결정 규정을 삭제함.
 - ※ 가부동수이면 과반수의 찬성이 아니므로 부결로 보는 것이 당연하고 위원장에게 표결권 외에 결정권을 주는 것은 민주적 의사결정에 반함.
- 본 조례 개정안은 예산편성, 집행, 모니터링 등 예산 전 과정에서의 주민참여와 사회적 약자, 청년 등 다양한 주민의 위원회 참여를 독려하고 주민참여예산의 공공복리 증진 기여를 위하여 발의된 것으로 판단됨.
-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,
-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과정에서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거나 실질적인 논의와 의사결정에서 소외되며, 정보 격차나 소득 수준 등으로 인해 소외계층의 참여가 제한된다는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, 집행부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.

1) 제39조(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)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하여 수렴한 주민의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 5. 28., 2018. 3. 27.>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